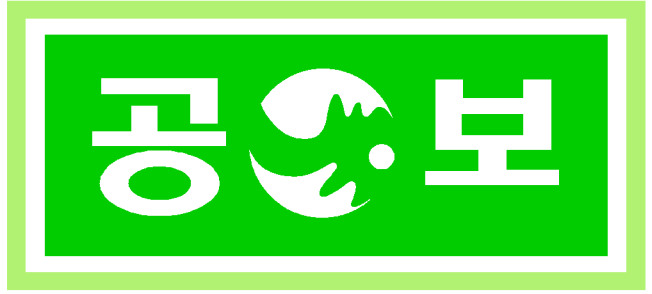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1129 호 2018. 7. 12. (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76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79호[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80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81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오치골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82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84호[도로명주소 고시] ..... 9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852호[북구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 11

<b>안 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구청소식→알림마당→북구공보</li> </ul>
----------------	---

<b>회 람</b>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7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18. 07. 03.
2. 점용·사용의 목적 : 진입도로 사용
3. 점용·사용의 장소 : 내안동 1036번지(동 소재 130번지 인근)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28㎡  
나. 기 간 : 2018. 7. 6. ~ 2023. 5. 3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8. 7. 6.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이 성 범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2길 123(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79호

##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공사 명칭 : 상안동 저지대 침수 방지 목적 성토 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이 용 원
  -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 37-1(상안동)
3. 하천공사의 목적 : 저지대 침수 방지 및 제방 통행자 불편 최소화
4. 하천공사의 위치
  - 가. 위치 : 상안동 1215-3번지 일원
  - 나. 면적 : 947㎡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08. 01.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상안동	1215-3	천	19,855	796	국토교통부
상안동	891	답	3,540	151	이용원 외 3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80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천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도로 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진장동 천곡동 451-7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일시 : 632㎡

영구 : 83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18. 07. 10. ~ 2021. 12. 31.

영구 : 2022. 01. 0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81호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오치골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오치골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21번지 등 1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139),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 나. 명 칭: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공원 조성 7,6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7. 12.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 052-241-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9	답	1,015	1,015	최태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54				
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9-1	채	334	334	울산광역시 북구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11	진	876	45	기획재정부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12	진	618	567	기획재정부					
5	울진광역시 북구 양정동	513	진	955	260	기획재정부					
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4	현	1,806	154.0	건설부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	채	104	104.0	울산광역시 북구					
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20	진	13	13	건설부					
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21	채	1,460	1,460	울산광역시 북구					
10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22	진	63	63	건설부					
1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41	채	848	848	울산광역시 북구					
1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81-1	도	1,638.0	1,638.0	건설부					
13	울진광역시 북구 양정동	84-3	임	1,124	1,124	정현경	경상북도 영천시 봉곡로 14 403동 802호 (양정동, 우공아파트)				
	13필지			10,854.0	7,625.0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지 장 물 조 서

NO	구 분	면적	평상	두름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매실나무	배롱나무		기 타
				R6	R2		R16	R14		R4	R2	
1	양정도 509	2.0*1.0 EA	2.5*1.5 EA	2.0	2.0	1.0	4.0	3.0	180.0	220.0		
2												
3												
4												
5												
6												
7												
소계		1.0	1.0	2.0	2.0	1.0	4.0	3.0	180.0	22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82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울산신문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둔절로 86, 삼호빌딩 11층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테화강 생태역사문화 대장정 행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명촌동 794-10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일시 6,45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18. 7. 20. ~ 2018. 7. 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184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엄포로 260-15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iuso.go.kr](http://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7.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송장동 170-3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129	2018-07-12	지점부락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지구 A548 11L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5로 17	2018-07-12	호계매곡지구 명칭 사용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2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23길 7	2018-07-12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4	울산광역시 북구 징지동 산 27 의 22필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하중양2로 87-33	2018-07-12	신하지구 중앙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5	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642-1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260-15	2018-07-12	영포항 개항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6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005-5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253	2018-07-12	관문성으로 가는길이란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852호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확정·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대상문화재(1개소)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검토구역 (지정구역 외곽부터)	비고
1	기념물 제17호	유포석보	울산 북구 정자동 625번지 일원	500m 이내	

#### 2. 허용기준(안) 마련 목적

- 문화재보호법령의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측가능성 도모

3. 공고기간 : 2018. 7. 12. ~ 8. 6.(26일간)

4.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6.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 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건축행위 등) : 북구청 문화체육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울산광역시 문화재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7.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2018. 8. 6.)
- 제출장소 : 북구청 문화체육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 제출방법 : 서면제출 우편 및 팩스(052-241-7332)
- 본 허용기준(안)은 최종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052-241-7332 )

-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 끝.



